

韓國圖書館史研究 (二)

朴 熙 永

第三章 高麗時代

第一節 機關과 施設

- 1) 書籍店, 書籍院
- 2) 書籍鋪
- 3) 內書省, 秘書省, 秘書寺, 秘書監, 典核署, 典核寺
- 4) 修書院
- 5) 文德殿, 長齡殿, 御書房, 秘書閣
- 6) 秘閣, 秘書閣

第三章 高麗時代

高麗時代와 함은 後三國時代 末期인 西紀 918년에 高麗 第1代 太祖 王建이 高麗를 建國하여 서부터 第34代 恭讓王4年(1392) 李成桂가 朝鮮을 建國하기 까지의 470有餘年間을 말한다.

高麗의 文化는 太祖時代에 이미 頹廢한 新羅末期의 모든 舊穀을 脫하여 雄偉한 發達을 하기始作하였다. 그리하여 第11代 文宗時代를 中心으로 해서는 極히 盛하여 그 時代의 文化는 高麗時代에 있어 서 가장 燦爛하였던 것이 있으나 第16代 容宗時代 以後 繼續하는 內亂과 外寇로 말미암아 燦爛하였던 文化는 나날이 衰退하여 갔다. 그러나 高麗末期에 가까워 第31代 恭愍王時代부터는 儒學이 隆盛하여 점에 따라 高麗의 文化는 다시금 復興하였으나 거듭하는 失政과 後嗣問題等으로 高麗는 滅亡하게 되었던 것이다.

高麗의 文學을 볼때 初期에 있어서는 新羅末期의 그것과 別로 다름이 없었으나當時 發達하여 가는 宋代文學의 影響을

받았고 또한 科舉制度에서 文藝를 重要視하는 原因等으로 文學에서 特히 詩文學이 發達하게 되었던 것이다. 高麗時代의 文學家로서 崔凝, 崔彥撝, 崔承老, 崔沖, 金黃元, 鄭知常(西京雜記), 金富軾, 李仁老(破闕集), 李奎報(李相國集), 崔滋(家集, 補闕集), 金克己, 李齊賢(益齊集), 李穀, 李穡(收隱集), 崔溢(農隱集), 李崇仁, 崔海(拙蘿千百, 東人之文)等의 文豪가 있어 이들이 高麗의 文學을 이룩하였다.

高麗의 史學은 成宗9年(990)西京에 修書院을 設置하여 史籍을 抄書刊하였으며 顯宗 4年(1013) 監修國史라는 職官을 두고 修史事業을始作하여 歷代王의 正史인 實錄이 編纂되었던 것이다. 反面에 여러 史家가 國史를 編하여 貴重한 資料를 남겨 주고 있다. 이를 列舉하면

金富軏—三國史記

釋一然—三國遺事

閔漬—編年綱目

李承休—帝王韻紀

釋覺訓—海東高僧傳 等이 있다.

高麗의 儒學은 廷鵠, 崔沖, 安裕, 白願正, 禹倬, 鄭夢羽等의 大學者가 繢出하여 儒學을 研究하였는데 그中에서도 崔沖은 海東孔子라는 別稱이 있었으며 宋에서도 널리 알려졌던 墓者였다. 白願正은 程朱學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輸入하여 研究한 墓者이고 鄭周는 程朱性理學의 始祖인 것이다.

高儒의 製紙술은 甚히 發達하였다. 종이는 中國에서 後漢時代 和帝元興元年(105)宦者蔡倫이 發明하였다고 「後漢書」에 記錄되어 있다. 製紙術이 우리나라에 傳하여 진것이 以이로 만드려진 書冊이나 卷子가 傳하여가서 우리나라에서 製紙術이 研究된 것인지 또는 技術을 習得하여 왔던 것인지 確實한 것을 알수 있으나 中國으로부터 製紙術이 드러와서 製紙되다가 高麗時代에는 이것이 많이 發達하여서當時宋이나 元이나 日本에서 所謂 高麗紙를 珍愛하도록 高麗紙는 品質이 優秀하였다. 高麗紙는 여의 種類가 있었던 것으로서 그中에서도 經典을 書寫하는데 使用되는 特品의 翠紙 또는 靑磁紙等이 있었다고 한다.(参考: 崔南善著 古事通)

高麗의 印刷文化는 佛教의 盛行으로 因하여 經典을 普及하고 保存할 必要性으로 해서 發達하였으며 또한 精密하고 鮮明한 宋版本의 刺戟을 받아 木版印刷術이 發達하게 되었다. 補宗6年(1101)에는 國子監(國立大學) 안에 書籍鋪(出版部 또는 印刷部)를 두고 秘書省所藏의 板木를 印刷하였으며 地方官署에서 經書, 醫書, 文集等의 刊行이 盛行되었던 것이다. 大藏經의 彫板은 高麗의 佛教學을 世界에 차량

하고 있는 것으로서 成宗14年(995), 宣宗3年(1086), 高宗38年(1251)의 三次에 걸친 大藏經의 雕板은 高麗木板印刷의 決算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高宗21年(1234) 鑄字로써 「古今詳定禮文」 50部를 印刷하였다는 史實이라던가 恭讓王4年(1392) 鑄字로써 書籍을 印刷하는 일을 管掌하는 書籍院을 두었다는 史實은 特記할 일이라고 하겠다.

高麗와 宋과의 貿易品中에는 書籍이 가장 一般性과 恒久性이 있으므로 해서 書籍의 輸入이 가장 盛行하였던 것이다. 江南으로 부터의 商船에는 언제나 新刊書籍이 積荷되어 왔으며 한편 往來하는 使臣과 留學生들의 가장 歡迎되는 膜物이 即 書籍이었던 것이다. 高麗人이 세로운 文化의 摄取에 热誠이 있고 書籍을 賞美하였다 함은 仁宗2年(1124) 宋의 使臣徐兢이 高麗를 다녀가서 著述한 「高麗國經」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高麗에 書籍이 많았다는 것은 宋의 哲宗이 高麗의 使臣에게 高麗에는 좋은 冊이 많다고 하니 所要의는 圖書를 傳寫寄送할 것을 부탁하면서 圖書 目錄을 준 것으로도 알 수 있으며 그 目錄은 123部 五千數十卷에 達하였다고 함을 볼 때 高麗에서 얼마나 書籍을 사랑하였던 가를 알 수 있다.

第一節 機關과 施設

1) 書籍店, 書籍院

高麗史 卷七七 百官志에

「書籍店一文宗定錄事二人 丙科權務吏屬記事二人記官二人書者二人忠宣併於翰林院後復置恭讓王三年龍四年置書籍院掌鑄字印書籍有令丞」이라고 있고

高麗史節要 卷三五 恭讓王四年正月條에

「初置書籍院掌鑄字印書籍」이라고 있다. 書籍店이라는機關은 文宗時代 (1047—1083)에 設立되었다가 忠宣時代 (1309—1313)에 翰林院에 合併되었다. 그후 다시 獨立하여 設置되었다가 恭讓王三年 (1391)에 書籍店이 廢止되었다고 하며 다음 해인 恭讓王四年 (1392)에는 書籍院이란 機關을 設置하게 되었다고 하다. 書籍院은 鑄字로 書籍을印刷하는 것을 管掌하는 機關으로서 令丞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書籍店과 書籍院을 같은 項에 둘것을 불예 書籍店도 書籍印刷를 管掌하던 官署였음을 알 수 있다.

恭讓王四年 (1392)에 鑄字로印刷하는 것을 管掌하는 國家機關인 書籍院이 있게 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高宗二十一年 (1234)에 「古今詳定禮文」五十部를 鑄字로印刷하였다는 記錄(東國李相國集)은 書籍院이 設置되기 約 160년前이 되며 또한 朝鮮 第3代 太宗 3年 (1403) 鑄字所를 設置하여 數十萬個의 銅活字를 鑄造하여 使用하게 된 때보다 不過 11년 前의 일이다. 書籍院의 設置는 鑄字印刷術이 發達하여 오다가 그 技術이 完全하여지고 活字도 많이 具備하였으므로 해서 비로서 國家機關으로서 書籍院이 設置된 것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書籍院이 設置되기 以前부터 鑄字印刷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 이 옳을 것이다.

2) 書籍鋪

高麗史 卷十一 世家 肅宗六年三月條外
高麗史節要 卷六 肃宗六年三月條에 「王申制以秘書省文籍板本委積損毀命置書籍鋪于國子監移藏之以廣摹印」이라고 있다.
肅宗6年 (1101) 3月11日 國子監으로 하여금 書籍舖를 設置하게 하고 秘書省이

갖고 있는 板木을 옮겨 이를 刊印할 것을 命하였다고 하는바 國子監은 高麗의 最高學府로서 國立大學에 該當하는 機關이고 보면 書籍舖는 國立大學出版部와 怡似한 機關이라고 하겠다. 高麗時代의 書籍印刷와 印刊의 技術機關으로 書籍店, 書籍院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內書省, 秘書省, 秘書寺, 秘書監 典校署, 典校寺

高麗史 卷七六 百官志에

「典校寺一掌經籍祝疏國初稱內書省成宗十四年改秘書省有監少監丞郎校書郎正字文宗定判事秩正三品(文宗五年內史門下省奏諸司判事本皆權倣近旨爲該官有違古制請改之從之)監一人從三品少監一人從四品丞二人從五品郎一人從六品校書郎二人正九品正字二人從九品校勘二人忠烈王二十四年忠宣改秘書監減判事降丞爲從六品郎從七品併留院官於校勘(文宗定御書院知院事副知院事判院兼押院二人檢計官二人留院官二人知書二人書手二十五人)三十四年忠宣降爲典校署爲藝文館所轄丞一人正五品郎一人正七品校勘一人正九品又置權知校勘十二人後陞爲典校寺置判事正三品令從三品副令從四品丞從五品郎正七品注簿正八品校勘正字並從九品恭愍王五年復稱秘書監改令爲監副令爲少監置著作郎二人正七品郎增二人降從七品復置秘書郎四人正八品校勘陞正九品判事丞正字如故十一年復稱典校寺改監爲少監爲副令草著作郎陞郎爲正七品革校書郎置注簿正八品校勘復降從九品餘並仍十八年復用五年官制二十一年復用十一年官制吏屬文宗置主事一人令史一人書藝十人記官二人書手十五人」이라고 있다.

國家의 經籍과 祝文等을 管掌하는 官署

로서 高麗初에는 内書省이라고 稱하다가
成宗14年 (995) 5月 13日 官制을 改定함에

內書省을 秘書省이라 改稱하게 되었으며
秘書省에 監, 少監, 丞, 郎, 棱書郎, 正
字의 官員이 있었다.

高麗史 危六 靖宗十一年四月條

「乙酉秘書省進新刊禮正義七十 本毛詩正

| 正三從二從四從五從正品 | | 正六從正品 | | 從七正八從八正品 | | 從八正九從九正品 | | 東屬 | |
|------------------|---------------------|----------|---------|----------|---------|----------|-----|-----|------|
| 覽初 | | 監 | 小監 | 丞 | 郎 | 校 | 書 | 郎 | 正字 |
| 武宗14年 (995) | 文宗時代 (1047-1082) | 判事 1人 | 監 1人 | 小監 1人 | 丞 2人 | 郎 1人 | 校 | 書 | 郎 |
| 忠烈王24年 (1248) | 忠烈王24年 (1248) | 判事 1人 | 監 1人 | 小監 1人 | 丞 2人 | 郎 1人 | 校 | 書 | 郎 |
| 忠烈王24年 (1248) | 忠烈王24年 (1248) | 判事 1人 | 監 1人 | 小監 1人 | 丞 2人 | 郎 1人 | 校 | 書 | 郎 |
| 恭愍王5年 (1236) | 判事 1人 | 監 | 少監 | 丞 | | 著作郎 | 秘書郎 | 注簿郎 | 俊勣正字 |
| 恭愍王11年 (1242) | 令 | 副令 | | | | 郎 | 秘書郎 | 注簿郎 | 俊勣正字 |
| 恭愍王18年 (1249) | 判事 1人 | 監 | 少監 | 丞 | | 著作郎 | 秘書郎 | 注簿郎 | 俊勣正字 |
| 恭愍王24年 (1252) | 令 | 副令 | | | | 郎 | 秘書郎 | 注簿郎 | 俊勣正字 |

義四十本命藏一本於御書閣餘賜文臣」라고 있다.

秘书省에서 經籍을 掌하였다고 함은 卽
圖書의 出版等의 일을 管掌하였음을 알 수
있다. 靖宗11年(1045) 4月23일에 秘書
省이 新刊의 禮記正義 70冊 毛詩正義 40
冊을 바쳤다고 하는데當時의 出版冊數가

70冊 40冊 程度인지
또는 그以上 發行하
였는지 알수 없으나
한 冊판은 御書閣에
두고 남어지를 文臣
에게 下賜하였다고
한다.

秘书省의 文宗時代
(1047-1083)의 職官
과 人員은 다음과 같
다.

| | | |
|-----|-----|----|
| 判事 | 正三品 | 一人 |
| 監 | 從三品 | 一人 |
| 少監 | 從四品 | 一人 |
| 丞 | 從五品 | 二人 |
| 郎 | 從六品 | 一人 |
| 校書郎 | 正九品 | 二人 |
| 王字 | 從九品 | 二人 |
| 校勘 | 從九品 | 二人 |

| | |
|----|-----|
| 主事 | 一人 |
| 令史 | 一人 |
| 書藝 | 十人 |
| 官記 | 二人 |
| 書手 | 十五人 |

高麗史 卷三十 忠
烈王十六年 十一月條

「申辰移國史及寶文閣秘書寺文籍于江華」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秘書省이 秘書寺로 改稱된 것을 알수 있다. 忠烈王16年(1290)前에 高宗41年(1254) 9月17일에도 秘書省이라고 記錄된 것으로 보아 高宗 41年(1254)부터 忠烈王10年(1209) 사이에 改稱된 것이 分明한 바

高麗史 卷二十八 忠烈王元年十月條에
「壬戌改定官制」

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秘書省을 秘書寺로 改稱하게 된것은 忠烈王元年(1275) 10月25일의 일이라고 하겠다.

忠烈王24年(1298) 12月27日? 秘書寺는 秘書監이라 改稱하게 되었으며

判事(正三品)을 없애고

丞(從五品)을 從六品으로 떠나트리고

郎(從六品)을 從七品으로 떠나트렸다
忠烈王34年(1308) 6月14日?에 秘書監은 典校署으로 改稱되어 藝文館所轄官署로 되었으며 官員은

丞 正五品 一人

郎 正七品 一人

校勘 正九品 一人

權知校勘 十二人

이 있었는데 後에 典校寺로 改稱하고 藝文館所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 職官으로는

判刑 正三品

令 從三品

副令 從四品

丞 從五品

郎 正七品

注簿 正八品

校勘 從九品

正字 從九品

의 官員이 있었다.

恭愍王5年(1356) 7月9日 典校寺를 다시 秘書監으로 復稱하게 되고

令 을 監으로

副令 을 少監으로 고치고 새롭히

著作郎 正七品 二人

郎 從七品 三人 (二人을 增加)

秘書郎 正八品 四人 (復置)

校勘 正九品 (前에 從九品을 升陞)

判事 丞, 正字는 前과 같음

등으로 職官에도 改稱, 增員 升陞가 있었다.

恭愍王11年(1363) 3月18日 秘書監을 다시 典校寺로 復稱하게 되었다

監 을 令으로

少監 을 副令으로

著作郎을 罷하고

郎 을 正七品 으로 (前에 從七品을 升陞)

校書郎을 罷하고

注簿 正八品

校勘을 從九品으로 (前에 正九品을 降等) 으로 改定하고 다른것은 前과 같다;

恭愍王18年(1369) 6月7일에 官制를 恭愍王5年(1356)에 定하였던 制度로 復舊하게 되어 典校寺는 다시 秘書監으로 되돌아 갔다.

恭愍王21年(1372) 6月10일에 恭愍王11年(1362)에 定한 官制로 復舊하게 되어 秘書監은 다시 典校寺로 改稱되었다.

高麗全時代를 通하여 文籍을 管掌하는 官署로서 그名稱이 內書省으로 始作하여 典校寺로 改稱되기 까지를 살펴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高麗初 内書省

成宗14年(995) 内書省이 秘書省으로

忠烈王元年(1275) 秘書省이 秘書寺로

忠烈王24年(1298) 秘書寺가 秘書監으로

忠烈王34年(1308) 秘書監이 典校署로
典校署가 典校寺로
恭愍王5年(1356) 典校寺가 秘書監으로
恭愍王11年(1362) 秘書監이 典校寺로
恭愍王18年(1369) 典校寺가 秘書監으로
恭愍王21年(1372) 秘書監이 典校寺로
即 內書省一秘書省一秘書寺一秘書監一
典校署一典校寺一秘書監一典校寺一秘書監
一典校寺의 順으로 改稱하면서 存在하였던 것을 알수 있다.

典校寺의 職官의 變遷을 圖表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P.9 參照)

高麗史 卷十一 肅宗六年三月條에 「壬申制以秘書省文籍板本委積損毀命置書籍鋪于國子監移藏之以廣摹印」이라고 있다.
肅宗6年(1101) 3月11日 秘書省의 文籍板本(板本이라고 있는데 板本을 말하는 것 으毀 解釋된다) 이 委積 損毀하여 있으므로 國子監에 命하기를 書籍鋪를 두고 秘書省의 板本을 옮겨 保管하고 이것을 印刷토록 하였는데 秘書省으로 부터 새로 設立된 書籍鋪에 옮긴 板本이 어떤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秘書省에는 文籍 뿐만이 아니라 板本까지도 保管하였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秘書省은 直接 印刷하는 일을 保管하지 않고 出版에 關한 일을 保管한 것이 無인가 생각되고 印刷에 關한 일은 書籍店이다 書籍鋪에서 한것으로 생각된다.

高麗史 卷二十 明宗二十二年四月條에 「壬子命吏部尚書鄭國儉判秘書-省事崔詵集書筵諸儒於寶文閣讎校增續資治通鑑分送州縣雕印以進分賜侍從儒臣」

明宗22年(1192) 4月11日 吏部尚書 鄭國儉이 秘書省判事 崔詵에게 命하여 資治通鑑을 譲校增續하고 이를 州縣에 分送하여 雕印해 바치도록 한事實과

高麗史 卷十一 肅宗六年四月條에

「甲辰翰林院奏御名同韻字請令-秘書省彫板頒示使人知所避諱」

肅宗6年(1101) 4月14일에 翰林院이 御所과 同韻의 字를 一般이 使用하는 것을 避하도록 하기 爲하여 諱字를 秘書省으로 하여 금 彫板하여 頒示토록 할것을 奏하였는데 이것으로 圖書出版에 關한 일을 秘書省이 管掌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高麗史 卷二十四 高宗四十一年九月條에 依하임

「丙寅樞密院副使崔溫奏秘書省齋醮 祭享文書故每月一人入直沐浴齋素終月乃出若翰林院寶文閣同文院御書院輪番迭宿或飯酒食肉或經微惡不宜會宿秘書省請禁之制可」

高宗41年(1254) 9月27일에 樞密院副使인 崔溫이 奏한 것인데 醇祭享文書를 秘書省이 管理하고 있으므로 每月一人이沐浴齋素하여 入直해서 그달이 끝나야 나오게 되는 것을 알수 있으며, 秘書省의 直宿은 翰林院, 寶文閣, 同文院, 御書院과 輪番迭宿하지 못할것을 奏한것을 볼때 秘書省은 非常 严重하게 생각했던 機關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4) 修書院

高麗史 卷三 成宗九年條에

「是歲教曰奏皇御宇焚三代之詩書 漢帝應期闢五常之載籍國家草創之始羅代喪亡之餘鳥跡玄文燼乎原燎龍圖瑞牒委於泥途累朝以來續寫亡篇述書闕典寡人自從嗣位益以崇儒踵修養日之所修繼補當年之所補沈隱士二萬餘卷寫在麟臺張司空三十車書藏在虎觀欲收四部之典籍以畜兩京之府藏青衿無閑市之勞絳帳有執經之講使奏韓之舊

俗知鄭魯之遺風識父慈子孝之常習兄友弟恭之懿宜令所司於西京開置修書院令諸生抄書史籍而藏之」

高麗史節要 卷二 成宗九年條에

「是歲下教置修書院于西京令諸生抄書史籍而藏之其院官令御史選官奏差」

「成宗9年(990)에 成宗이 教書에서 말하기를 奏皇時에 三代의 詩書를 불태우고 漢帝 期에 應하여 五常의 藏籍을 開明列하였다고는 하자만 國家初創의 羅代喪亡의 나머지가 烏跡玄文灰燼으로 되고 龍圖瑞牒泥塗에 말기고 累朝以來 亡篇을 繳寫하고 閻典을 連書하였다. 寡人位를 嗣한以來 徒復儒를 崇하고 異日의 修한것을 鍾修하고 當年的 缺한 것을 补하여 沈隱士二萬餘卷을 麟台에 寫存하고 張司空三十車의 書를 虎觀에 保藏하고 四部의 典籍을 收하여서 兩京의 府에 保藏토록 秦韓舊俗으로 하여금 鄭魯의 遺風을 알리고 父는 慈하고 子는 孝하는 常習兄은 友하고 弟恭하는 慈합을 알릴 것이다. 有司에 令하기를 西京에 修書院을 開設하고 諸生에 令하여 史籍을 抄書 保藏토록 하고 修書院에 御史로서 選官 奏差하였다.」라는 記錄은 高麗가 建國한지 不過80年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이며 文物制度가 漸次로 整備되어 가던 때이다. 修書院의 開設은 圖書를 藏하였다는 記錄으로 高麗時代에서 처음 나오는 記錄이다.

5) 文德殿, 長齡殿, 御書房, 秘書閣

高麗史 卷十一 肚宗一年七月條에

「庚寅朔御文德殿覽歷代秘藏文書擇 部秩完全者分藏于文德長齡殿御書房秘書閣餘賜兩府率臣詔院史翰內侍文臣有差」

肅宗1年(1096) 7月1日 肚宗이 文德殿에서 歷代 秘藏의 文書를 閱覽하였는데

부秩이 完全한 것을 끌라서 文德殿, 長齡殿, 御書房, 秘書閣에 分藏하고 남아지는兩部의宰臣과 詔院史翰內侍文臣에게 賜하였다고 한다. 이記錄으로 宮中에 있던 藏書하는殿, 閣의 이름을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이를殿, 閣은 王에 따라 用度가 달리지기도 하였던 것이며 文德殿은 仁宗 14년(1137) 修文殿이자 改稱하였다.

6) 秘閣, 秘書閣

高麗史 卷七 文宗十年八月條에

「戊辰 西京留守報京內進士明經等諸業舉人所榮書籍率皆傳寫字多乖錯請分賜秘閣所藏九經漢晉唐書論語孝經子史諸家文集醫卜地理律算諸書置于諸學院命有司各印一本送之」

文宗10年(1056) 8月19일 西京留守의 報告에 依하면 西京內의 進士 明經等의 諸書는 大概 傳寫한것으로서 字가 質이乖錯하여 있으므로 願하기로 秘閣所藏의 九經, 漢, 晉, 唐의 書, 論語, 孝經, 諸家の 文集, 醫書, 卜筮, 地理, 律算의 諸書를 分賜하여 諸學院에 둘것을 請하고 있다.

秘閣은 宋의 制度에서 온 것으로 宮中에 있으며 書籍을 藏하였던 곳이다. 秘閣에 藏한 高麗史의 記錄 몇개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高麗史 卷八 文宗十二年九月條에

「己巳朔忠州牧進新雕黃帝八十一難經川玉集傷寒論本草括要小兒巢氏病源小兒藥證病源一十八論張仲卿五臟論九十九板詔置秘閣」

高麗史 卷八 文宗十三年二月條에

「甲戌安西都護府使都官員外郎 異善貞等進新雕肘後方七十三板疑獄集一十一板川玉集一十板知京山府事殿中內給事李成美進新雕隋書六百八十板詔置秘閣各賜衣鬱

高麗史 卷八 文宗十三年四月條에

「庚辰知南原府事試禮部員外郎李 靖恭進
新雕三禮圖五十四板孫卿子書九十二板詔
置秘閣仍賜衣襍」

高麗史 卷八 文宗十七年四月條에

「乙亥賜太子秘閣九經及史傳百家書」

以上은 主로 文宗時代의 秘閣에 關한
記錄인 바 文宗時代는 가장 文化가 發達하
었던 때인만큼 秘閣에 所藏된 圖書가 많
었으며 또한 밟아 둔 新雕板木도 많았던
것을 알수있다. 文宗17年 (1063) 4月4日
太子에게 賦한 圖書亦 九經及 史傳百家書
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秘閣에 많은 圖

書가 收藏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다.

肅宗1年 (1096) 7月1日 肅宗이 文德殿
에서 歷代 秘藏의 文書를 閱覽하였다. 部
秩이 完全한 것을 풀라서 文德殿, 長齡殿
御書房, 秘書閣에 分藏하였다는 記錄은
여기서 말하는 秘書閣이 秘閣을 改稱한
것인지 또는 秘閣, 秘書閣을 通用하였는
지 與否를 알수 없으나 秘書閣이라고
한 것은 肅宗1年 (1096)이고 文宗(1047—
1083)때는 보다 秘閣이라고 記錄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秘閣을 秘書閣으로 改稱한것
이 아닌가 한다. (筆者 外大 司書長)

新刊圖書都賣

株式會社 三信書籍

서울特別市鍾路二街八〇

振替 서울 353 電話 ③ 4569

各級學校圖書部
各圖書館
納品特別奉仕

어떠한 書籍이라도 下命하시는대로
完全具備 納品에 特別奉仕합니다。